

의안번호	2212348
의 퇴 인	이병진의원
회 답 일	2025.9.18.
추계번호	25D4546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65세 이상 특수임무공로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수준의 특수임무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, 2027년 25억 4,700만원, 2031년 42억 6,9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166억 4,400만원(연평균 33억 2,9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특수임무명예수당의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특수임무명예수당 지급 (안 제76조의2)	2,547	2,870	3,248	3,710	4,269	16,644	3,329

주: 본 추계는 특수임무공로자 실인원과 참전명예수당의 단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로, 실제 개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면 추가재정소요는 본 추계와 달라질 수 있음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6조의2 (특수임무명예수당)	국가보훈부장관은 65세 이상의 특수임무유공자에게는 특수임무수행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특수임무명예수당을 지급함. 다만, 특수임무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(제1항) 특수임무명예수당은 월액(月額)으로 지급하며, 그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7항)	의무규정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76조의2(특수임무명예수당)	0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다른 법률의 예우 대상이 아닌 65세 이상 특수임무유공자 인원에 특수임무명예수당 월지급액과 12개월을 각각 곱하여 추계함
- 본 추계에서 개정안에 따라 특수임무명예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특수임무유공자(특수임무공로자) 인원은 연도별 65세 이상 실인원을 기준으로 추정하되, 사망률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
 - 특수임무유공자는 특수임무사망자, 특수임무부상자, 특수임무공로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, 사망자와 부상자는 다른 보훈관계법에 따라 전몰군경, 전상군경 등으로서 예우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, 본 추계에서는 특수임무공로자에 한정하여 실인원을 추정함
 - 국가보훈부에 따르면, 연도별 65세 이상 특수임무공로자의 실인원은 다음 표와 같이 추정됨

[표 2] 특수임무공로자(65세 이상) 실인원 추정: 2027~2031년

(단위: 명)

구분	2025.8.	2027	2028	2029	2030	2031
특수임무공로자	371	412	434	459	490	527

자료: 국가보훈부

- 본 추계에서 특수임무명예수당 단가는 참전명예수당 수준으로 가정하되, 최근 5년(2021~2025년) 참전명예수당의 단가 상승률¹⁾을 적용하여 추정함

[표 3] 특수임무명예수당 월 지급액 추정: 2027~2031년

(단위: 천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
특수임무명예수당	515	551	590	631	675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1)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 및 단가상승률: 2019~2025년

(단위: 천원)

구분	2019	2020	2021	2022	2023	2024	2025	단가상승률
참전명예수당 (월 지급액)	300	320	340	350	390	420	450	6.99%

자료: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

- 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법안의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 내역

-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기간 동안 65세 이상 특수임무공로자 추정 인원에 특수임무명예수당 단가(참전명예수당의 100% 수준)를 곱하여 추계함
- 추계결과, 개정안에 따라 65세 이상 특수임무공로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수준의 특수임무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, 2027년 25억 4,700만원, 2031년 42억 6,9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166억 4,400만원(연평균 33억 2,9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4] 특수임무명예수당의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명, 백만원)

구분	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특수임무명예수당 지급 (안 제76조의2)	특수임무공로자 인원(A)	412	434	459	490	527	—
	월지급액(B, 천원)	515	551	590	631	675	
	개월수(C, 개월)	12	12	12	12	12	—
	추가재정소요(D=A×B×C)	2,547	2,870	3,248	3,710	4,269	16,644

주: 본 추계는 특수임무공로자 실인원과 참전명예수당의 단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로, 실제 개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면 추가재정소요는 본 추계와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특수임무공로자 추정 실인원과 참전명예수당의 단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로, 실제 개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면 추가재정소요는 본 추계와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장삼열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삼열	02-6788-4831	jsy@na.go.kr